



문서번호 사법 2013-0501
 수 신 법무부장관 (전화 : 02-503-7000 팩스 : 02-503-3532)
 참 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(법무부 법무실 법무인력과)
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(담당 : 김은영 간사 02-723-0666 jw@pspd.org)
 제 목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관련 질의
 날 짜 2013. 5. 2. (총 2 쪽)

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관련 질의

.....

1. 안녕하십니까?
2. 지난 4월 26일 법무부는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'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'와 '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'을 결정, 발표하였습니다.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(소장: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는 그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도입한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,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 질의하오니,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- 아 래 -

- 1) 법무부는 "제2회 변호사시험은 '12. 3. 23.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"입학정원 2,000명의 75%(1,500명) 이상" 합격 기준을 적용"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,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"입학정원 2,000명의 75%(1,500명) 이상"이라는 합격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"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하여,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"이라고 발표하였는데, "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"과 "자격시험적 성격"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

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“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”를 변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어떠한 요소들을 검토 하였으며 그 요소별 평점은 각각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3) 시험의 평가에서 “과락”은 그 과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역으로 “면과락”은 최소한의 기준점은 충족하였다는 평가입니다. 그렇다면 모든 과목에서 “과락”을 면한 응시생 1,703명은 변호사시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셈입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의 165명의 불합격자는 어떤 이유에서 “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”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별되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- 4) 시험을 통한 평가에서 최소한의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을, 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해둔 합격자 수 또는 입학정원 대비 일정비율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자격시험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시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- 5)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 전달 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“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”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,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.
그렇게 해야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국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1차 회의부터 7차 회의까지의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·이석태·정현

